

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청법인	명칭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
대표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	전화번호	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			
	금액				
	처분방법				
처분사유					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(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총회의 회의록(사단법인의 경우) 1부 (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결과 통지 신청인 교육부 및 사도교육청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		